

| | |
|-----------|----------------|
| 의안번호 | 제557호 |
| 의결 연월일 |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12일 |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557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1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제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상자서전 사업의 종류 규정(안 제5조)
- 수행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안 제6조)
- 홍보와 교육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규정(안 제7조)
- 영상자서전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제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자서전”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도민(생활인도 포함한다)의 가족이 출연하여 제작되는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영상자서전 촬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자서전 사업 추진계획
2.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자서전 사업)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자서전 제작·관리 및 보존·활용
2.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및 수행기관 운영
3. 그 밖에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과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교육)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영상자서전 촬영 등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평가)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영상물의 활용)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수행기관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영상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통하여 도민 기록문화 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민의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이 영상자서전 촬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영상자서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
- 영상자서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과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실비를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조례안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홍보비 : 홍보물품구입(160,000천원), 홍보부스운영(30,000천원), 홍보영상제작(10,000천원)
 - 도거점기관 운영 : 인건비 2명(67,600천원), 운영비 등(58,400천원)
 - * 인원 2명(팀장 1명, 팀원 1명), 홈페이지 데이터 관리(IDC입주), 운영 및 유지보수(월 55만원)
 - 찾아가는 영상자서전 : 인건비 3명(135,183천원), 운영비 등(64,817천원)
 - * 인원 3명(디렉터 3명)
 - 시니어 유튜브 양성 및 운영 : 100,000천원(도비^{100%})
 - 인건비 1명(44,661천원), 교육비 및 운영비(55,339천원)
 - * 인원 1명(디렉터 1명), 시니어유튜버 20명
 - 250,000원 × 20명 × 5개월 = 25,000천원 (활동비, 전액도비)
 - 노인일자리 촬영단 : 소요예산(국비 노인일자리사업) 423,200천원
 - * 인 건 비 : 50명 × 634천원 × 10개월 = 317,000천원
 - * 부대경비 : 50명 × 2,124천원 = 106,200천원
 - * 참여자 수 : '24년 : 50명, '25년 : 80명, '26년 ~ '28년 : 100명 추산
 - 시군 사업단 운영 : 660,000천원(264,000도비^{40%}, 396,000시군비^{60%})
 - * 11개 시군 × 60,000천원 × 1식 = 660,000천원

○ 추계 결과

- ('24년) 1,709,200천원, ('25년) 2,078,920천원 ('26년) 2,380,380천원, ('27년) 2,589,500천원 ('28년) 2,775,000천원 소요
- 매년 인건비 인상 및 물가상승률 등 반영
- * 향후, 영상자서전 사업유형 발굴·추진상황에 따라 비용추계 변경(증액) 가능

○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노인일자리) 및 도비, 시군비

- 노인일자리촬영단 : 국고보조(노인일자리사업)
- 시군 사업단 운영 : 도비 및 시군비
- 그 외 사업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 구 분 | 계 | 1차년도 (2024년) | 2차년도 (2025년) | 3차년도 (2026년) | 4차년도 (2027년) | 5차년도 (2028년) |
|------------|------------|-----------------|-----------------|-----------------|-----------------|-----------------|
| 세 입 | 1,898,360 | 211,600 | 338,560 | 423,200 | 450,000 | 475,000 |
| 국비(노인일자리) | 1,898,360 | 211,600 | 338,560 | 423,200 | 450,000 | 475,000 |
| 세 출 | 11,533,000 | 1,709,200 | 2,078,920 | 2,380,380 | 2,589,500 | 2,775,000 |
| 홍 보 비 | 1,0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도 거점기관 운영 | 706,280 | 126,000 | 121,800 | 133,980 | 159,500 | 165,000 |
| 찾아가는 영상자서전 | 1,130,000 | 200,000 | 210,000 | 220,000 | 240,000 | 260,000 |
| 시니어 유튜버 양성 | 5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노인일자리 촬영단 | 3,796,720 | 423,200 | 677,120 | 846,400 | 900,000 | 950,000 |
| 시군 사업단 운영 | 4,400,000 | 660,000 | 770,000 | 880,000 | 990,000 | 1,100,000 |
| 재원 조달 | 11,533,000 | 1,709,200 | 2,078,920 | 2,380,380 | 2,589,500 | 2,775,000 |
| 국 비 | 1,898,360 | 211,600 | 338,560 | 423,200 | 450,000 | 475,000 |
| 도 비 | 5,286,116 | 911,160 | 973,656 | 1,048,300 | 1,140,500 | 1,212,500 |
| 시 군 비 | 4,348,524 | 586,440 | 766,704 | 908,880 | 999,000 | 1,087,500 |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홍지연